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 지 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24-23
--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20.

발 의 자 : 김지수, 신찬호, 정정희,
전철규, 고찬양, 김현진,
박학용

1. 제안이유

비대면 생활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스마트폰 활용 및 무인 정보 단말기(키오스크) 보급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많아짐. 이에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(안 제6조제4호)
- 나. 자치법규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- 나. 협조부서 : 어르신복지과
- 다. 입법예고 : 2024. 2. 23. ~ 3. 4.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건강증진) ① (생 략)</p>	<p>제5조(건강증진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회·문화활동 장려) ①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·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4. (생 략)</p>	<p>제6조(사회·문화활동 장려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노인 스마트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</u>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

□ 「**노인복지법**」

-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**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**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장애인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접근권)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